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. 8. 18 선고 2020가단370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조합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1. 7. 7.

판 결 선 고 2021. 8. 18.

주 문

1. 피고와 망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12. 19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9. 12. 13. 접수 제5458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원고의 망 D에 대한 채권

1) 원고는 망 D(2020. 1. 20. 사망)과 2011. 7. 8. 대출거래약정(이하 ‘이 사건 대출거래약정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2015. 4. 16. 신용카드(E) 이용계약(이하 ‘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 망 D은 위 각 계약에 따라 마이너스 통장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나, 2019. 12. 27.부터 위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고, 2020. 7. 9.부터 위 대출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.

2) 원고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과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라 망 D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은 2019. 12. 19. 기준 31,618,514원(= 마이너스대출채무 29,536,541원 + 신용카드대금 2,081,973원)이고, 2021. 6. 30. 기준 34,525,202원(= 마이너스대출채무 32,138,220원 + 신용카드대금 2,386,982원)이다(이하 원고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과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라 망 D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‘이 사건 대출금 등 채권’이라 한다).

나. 증여계약의 체결

망 D은 2019. 12. 19.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증여계약(이하 ‘이 사건 증여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피고는 2019. 12. 31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’라 한다)를 각 경료하였다.

다. 채무초과상태 등

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망 D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~5, 18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

원고의 망 D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등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성립하여 있었거나,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(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및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)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(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), 이 사건 대출금 등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1) 당사자들의 주장

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,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,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시가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였으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.

2) 관련 법리

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,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신의 부동산을 부당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그와 같은 양도행위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(대법원 1996. 5. 14. 선고 95다50875 판결 등 참조).

3) 판단

살피건대, 갑 제5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F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,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,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. 3. 30. 2015. 3. 27.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03,000,000원, 채무자 G, 채권자 F조합으로 하는 내용의 공동근저당권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’이라 한다)이 설정되어 있던 사실, ②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액수는 2019. 12. 19. 기준으로는 67,000,000원이고, 2021. 5. 6.

기준으로는 65,000,000원인 사실,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2019. 12. 19. 기준으로는 153,327,330원, 2021. 6. 28. 기준으로는 171,664,21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.

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당시의 시가 153,327,330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7,000,000원을 공제한 86,327,330원(= 153,327,330원 - 67,000,000원)의 범위 내에서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져 있었다고 할 것이다.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대출금 등 채권 31,618,514원은 위 공동담보의 범위 내에 있었고, 망 D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되었으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한편, 망 D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.

3.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

가. 피고의 주장

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,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에 모자라는 금액이었기 때문에,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. 또한 피고는 망 D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중국인 H과의 혼인무효의 소 제기 등의 문제 때문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.

나. 관련 법리

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.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,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,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,

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·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7. 11. 29.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).

다. 판단

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53,327,330원으로,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7,000,000원을 상당히 초과하여 담보가치가 높은 부동산이었던 점, ② 피고는 망 D의 형으로 상당히 친밀한 인적 관계에 있었던 점, ③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던 점, ④ 망 D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던 중국인 H과의 혼인무효의 소 제기 등의 문제 때문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 하나의 동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, 피고에게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,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관한 추정이 반복된다고 보기 부족하고, 달리 위 추정을 반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

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. 또한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원물반환이 원칙이고, 달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,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5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인민

[별지]

부동산의 표시

1.전라북도 익산시

답 3002.9㎡

2.전라북도 익산시

답 1127.4㎡

-이 상-

